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문답풀이 / 로마규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 팩스 (02) 522-7285
<http://minbyun.jinbo.net> m321@chollian.net

민
주
사
회
를
위
한
변
호
사
모
임

Ib1.8

편집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원 :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Forum-Asia)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CICC)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문답풀이 / 로마규정 -

편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원: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Forum-Asia)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CICC)

한국인권보장 국제형사재판소 소책자



한국인권보장
국제형사재판소
소책자

제작: 아시아 권리위한 공동체
후원: 아시아 권리위한 공동체(Area)

Development for Human Rights Asia

Consulta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CICC)

소책자를 발간하며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근거규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 출범의 역사적 의미는 우선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그리고 침략범죄 등의 극악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제공동체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데 있다. 이들 범죄가 세계 어느 곳에서 벌어진다고 해도 해당국이 그 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국제사회가 직접나서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기본 목적인 것이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불처벌(Impunity)의 문제는 그 해결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인류의 창조물이 헛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우리한국사회에 요구하는 제반의무가 하루빨리 충실히 이행되길 바란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비준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그에 따른 국내이행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에 있어 아시아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인권보장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본 소책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문답풀이와 로마규정 국문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답풀이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NGO연합(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CICC))'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초로 최근의 상황을 더하여 편집하였다. 로마규정 국문본은 외교통상부의 번역본을 바탕으로 민변의 국제연대위원회와 한동대 법학과 교수진이 공동으로 수정, 감수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소책자가 국제형사재판소 참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02년 9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문답풀이)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1
Q-2.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
Q-3.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들을 다루게 되는가?	2
Q-4. 침략행위, 테러리즘 및 미약거래 등의 범죄도 다룰 수 있는가?	3
Q-5. 성범죄도 기소할 수 있는가?	4
Q-6.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4
Q-7. 국제형사재판소는 언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는가?	5
Q-8. 국제형사재판소가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보충적 관할권이라 무엇인가?	6
Q-9. 범죄혐의자를 어떻게 기소, 체포, 그리고 인도하는가?	6
Q-10. 소추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권한남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7
Q-11. 재판관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9
Q-12. 국가원수, 고위 정부공무원 또는 군지휘관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가?	9
Q-13. 범죄혐의자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는가?	10
Q-14.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11
Q-15. 비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11
Q-16. 국제형사재판소가 각 국의 군대 또는 평화유지군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지 되지 않을까?	12
Q-17. 최근 미국이 자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기소면책을 부여하도록 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각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13
Q-18. 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적 장애요인을 무엇인가?	14
Q-19. 로마규정의 비준을 전후로 한국은 어떤 국내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15
<별첨> 관련 사이트	17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유엔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을 이미 1948년에 인식했으며,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르완다나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극악한 반인도적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비로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이 1998년 7월 17일 채택되었다. 200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총 139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협약의 규정에 따라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및 검사 선출 등을 준비중이며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로마규정의 내용을 초안할 당시 적극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나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다.

Q-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

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이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효력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범죄를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자적인 기관이 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는 절대 면책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재판소는 미래의 폭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존의 국가 사법제도를 보충하는 의도로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각 국의 법원이 해당 범죄를 조사 또는 기소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는 각국의 영토 내에서 저질러지거나 해당 국민들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국가가 조사하고 기소하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게 된다.

Q-3.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들을 다루게 되는가?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관할 범죄의 유형은 보다 명확한 용어정의를 위해 로마규정의 각 조항을 통해 자세히 정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단살해죄(Genocide)는 국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저질러진 살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강간·강제임신·성적 노예화 등의 중대한 성폭력, 강제실종 및 인종차별 등.

□ 전쟁범죄(War crimes)는 국제 및 국내무장전투에서 대규모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1949년 제네바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전쟁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내전투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50년간 국제적 분쟁이 아닌 국내분쟁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인권 유린이 발생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Q-4. 침략행위, 테러리즘 및 마약거래 등의 범죄도 다룰 수 있는가?

로마회의에 참여했던 많은 국가와 비정부기구(NGO)들 사이에는 침략범죄(crimes of aggression)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침략범죄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의를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결과, 로마규정에 이 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나, 침략범죄의 정의, 그 구성요건 및 관할권 행사의 조건들에 관하여 검토회의를 통해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이루어질 때까지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을 국제형사재판소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현장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범죄가 실제로 저질러졌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로마규정은 침략범죄에 관한 최종 내용이 유엔현장의 관련 조항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리즘과 마약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임사항(mandate)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해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테

러리즘의 정의에 대해 로마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마약범죄를 조사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각 국 대표들은 당사국들이 향후의 검토회의에서 위의 범죄들을 포함시키도록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Q-5. 성범죄도 기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로마규정은 강간·성적 노예화·강제배출, 강제임신 및 강제불임 등의 성폭력 범죄가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질 때 이를 인도에 반하는 죄의 구성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국제 또는 국내의 무장 충돌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쟁범죄로도 간주된다. 르완다와舊유고슬라비아에서, 강간과 성폭력은 테러를 가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그들이 속한 특정 민족 집단 및 사회 전체의 여성들을 모욕하고 비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특별재판소는 강간과 기타 성폭력 사건을 기소했을 때 피해자들이 때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를 두려워하는데다가 심지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다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해자와 증인들이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는 증인과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및 안전조치, 상담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 및 증인 담당부(Victims and Witnesses Unit)'를 둘 예정이다.

Q-6.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국제형사재판소는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피해자의 손해,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구체적인 배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또한 재판소의 관할권 하에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탁기금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부과한 벌금 및 몰수를 통해 징수된 현금 및 기타 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

Q-7. 국제형사재판소는 언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는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소급되지 않는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이 발효된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경우 관할권 인정에 관해서는 각 국가의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위와 같이 자동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제법에 있어 주요한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전쟁범죄의 경우,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발효 후 7년 동안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사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은 임시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사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로마규정의 당사국이거나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형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Q-8. 국제형사재판소가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보충적 관할권이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관할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이다. 즉, 각 국의 법원은 자국 관할권내의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당사국의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활동을 개시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소요 또는 분쟁 등으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정권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을 의미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특정사건을 재판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즉 재판적 적격성(admissibility)의 문제는 로마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로마규정은 재판적격성에 대한 결정이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를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및 이해관계국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나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해당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Q-9. 범죄혐의자를 어떻게 기소, 체포, 그리고 인도하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 주체는, 로마규정 당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이며,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예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권력에 의하여 비호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공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당사국의 협력의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자국민의 인도를 국내법률로 금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나, 로마규정 협상 당시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자국의 국내 법이 범죄 혐의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인도(surrender)는 타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인도(extradition)와는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몇몇 국가들은 자국의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Q-10. 검사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관할 넘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로마규정 협상 당시, 수석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수석검사가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수석검사는 접수된 정보의 중대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국 정부, 유엔기관, 정부간 기구(IGO), 비정부기구(NGO)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증언을 접수할 수 있다.

로마규정은 수석검사의 독자적인 기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수석검사는 자체수사를 실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사를 실시하기 전 수석검사는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예심재판부(Pre-Trial Chamber)로부터 수사개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및 해당국가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admissibility)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나 기소를 1년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예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다. 이러한 유예조치는 평화조성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또는 기소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석검사는 로마규정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를 통해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다음과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석검사는 높은 도덕성 그리고 형사사건의 기소와 재판에 있어 고도의 능력과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수석검사의 자격상실에 관한 문제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상소재판부(Appeals Chamber)에서 결정된다. 또한 로마규정 당사국총회는 수석검사가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로마규정에 따른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수석검사를 해임시킬 권한을 갖는다.

Q-11. 재판관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고의 전문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갖춘 18명의 재판관을 두게 되는데, 이들은 각 국가에서 최고의 사법직에 임명될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재판관의 인선기준에 있어, 18명 중 적어도 9명은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최소 5명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조예가 깊어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또한 로마규정 당사국의 국민만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동일 국가의 재판관이 2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3일부터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된 재판관 선출 절차에 따르면, 각 국은 18표의 투표권 중 남녀 재판관 후보를 각각 최소 6명씩 선출해야하고, 5개 대륙에서 각각 최소 3명의 후보에 투표를 해야 한다. 각 후보들은 2/3 이상을 득표해야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최종 선출된다. 재판관 선거는 내년 2월에 열리는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법적 기능에 방해가 되거나 그들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이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재판관은 해임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안전장치는 재판관의 독립성, 청렴 및 능력을 보장하고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Q-12. 국가원수, 고위 정부공무원 또는 군지휘관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 로마규정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로마규정은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형을 부여하는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각국의 국내법 특히 헌법 규정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각국은 각국의 헌법이론과 현실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거나 헌법규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군지휘관 역시 직접적으로 행한 범죄 또는 그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군대가 행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그의 군대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발생한다. 이외에도, 사실상의 군지휘관으로 활동한 민간인 역시, 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질 것이라는 정보에 대해 미리 알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무시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Q-13. 범죄 혐의자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는가?

그렇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 또는 비당사국이라 할지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임시로 인정한 경우,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당사건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는 기소가 가능하다.

Q-14.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로마규정은 피고인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인권기구들에 구현되어 있는 관련기준들도 확대시키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로 기소된 개인은 공개 심리, 공평하게 진행되는 공정한 심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가장치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소추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제도가 있다. 이러한 심사과정은 경미하거나 남용적인 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와 소추로부터 무고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로마규정은 무죄추정(the 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법의 현 추세를 고려하여 사형제도는 채택하지 않았다.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고 30년의 유기징역 또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범죄 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 재산 및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Q-15. 비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로마규정은 비당사국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해 명시적인 일반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기존의 국제법에 의거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이러

한 재판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는 범죄 혐의자들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타국가로 인도해야 한다. 1973년 12월, 유엔 총회는 결의안 3074호를 통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사, 체포, 인도 및 처벌에 대한 국제협조원칙'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이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양자적·다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비당사국이라 할지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임시로 관할권을 인정한 경우, 국제형사재판소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도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로마규정 비당사국들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원요청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Q-16. 국제형사재판소가 각국의 군대 또는 평화유지군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지 되지 않을까?

이미 기존의 국제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국 국민이 위 범죄의 희생자가 된 경우 해당국가가 범법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리와 법적 의무 등을 마련하고 있다. 로마규정은 이러한 기존의 조약법(treaty law) 원칙들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법에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권리나 법적 의무도 생성하지 않는다. 비당사국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며 비당사국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

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을 상대로 한 의도적인 공격행위를 관할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평화유지군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공격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로도 간주될 수 있다.

Q-17. 최근 미국이 자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기소면책을 부여하도록 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각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2001년 12월 31일 로마규정에 서명한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계속 미뤄오다가 급기야 지난 2002년 5월 서명 자체를 철회한다고 선언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미국은 자국의 군인, 안보정책 담당 고위관리 등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와 기소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反국제형사재판소 정책은 지난 2002년 7월 12일 '비당사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를 1년간 면책한다'는 결의안(1422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된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이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면책특권협정이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면책특권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원에서의 기소 및 수사조차 명확히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범죄인에 대한 불처벌(imprisonment)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전쟁범죄 등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러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둉티모르 등 12 개국이 미국과의 면책특권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는 많은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은 이 국가들이 해당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면책 허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Q-18. 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적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로마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이므로 조약을 가입함에 있어서는 국내법적 장애가 무엇인지를 살펴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헌법제6조) 국내법이 로마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로마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어(소위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 반드시 국내법적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충되는 국내법이 헌법인 경우에는 조약을 헌법에 우선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헌법 이외의 국내법률과 상충되는 경우라도 법적용의 명확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로마규정을 가입함에 있어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로마규정 제27조 1항이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원수도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우리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조항(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규정의 위 조항이 우리 헌법과 상충된다고 보아 로마규정의 가입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가. 만일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헌법개정의 복잡성에 비추어 당분간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못하는 결과를 냉고 말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는 헌법개정 없이도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규정상의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대부분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할 것이고 우리 헌법은 혁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자체에서 탄핵절차를 통하여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직을 파면하여 일반인과 똑같은 지위로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있어 헌법개정 없이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통령의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Q-19.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비준을 전후로 한국은 어떤 국내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로마규정을 비준한다고 해도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로마규정의 가입을 전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로마규정의 보충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내이행장치와 당사국의 협력의무를 이행할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규정상의 관장범죄는 당사국의 국내사법절차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때 혹은 국내사법절차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반드시 로마규정의 관장범죄를 우선 국내사법절차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로마규정을 비준하게 되면 한국은 국내 형사절차에서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침략범죄 등을 처

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형사법은 이러한 범죄를 적절히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이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이유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법률의 내용은 위의 범죄유형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로마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시효부적용원칙, 보편적 관할의 원칙,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원칙 등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운동과도 패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로마규정은 당사국에 범죄인의 인도와 수사과정 등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할 경우 국내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위의 협력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로마규정의 비준을 전후로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위 두 가지 내용의 법률을 전부 제정하는 나라와 협력의무만을 제정하는 나라(이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범죄에 대해 기존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들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

● 관련 사이트 ●

U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ite

<http://www.un.org/law/icc/index.html>

Amnesty International

<http://web.amnesty.org/web/web.nsf/pages/ICChome>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ttp://www.iccnow.org/>

Council of Europe

<http://www.legal.coe.int/criminal/icc/>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campaigns/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et Library

<http://www.lib.uchicago.edu/~llou/icc.html#internet>

International Center for Criminal Law Reform and Criminal Justice Policy

<http://www.icclr.law.ubc.ca/Site%20Map/Programs/ICC.htm>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http://www.lchr.org/IJP/home.htm>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문본)

전문	18
제1부 재판소의 설립	19
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준거법	20
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	35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41
제5부 수사 및 기소	52
제6부 공판	63
제7부 형벌	74
제8부 상소 및 재심	75
제9부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79
제10부 집행	92
제11부 당사국총회	96
제12부 재정	97
제13부 최종조항	99
<별첨> 로마규정 비준 현황	10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전문

이 규정의 당사국들은

모든 국민들은 공동의 유대로 결속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는 공유의 유산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러한 섬세한 모자이크는 어느 때라도 깨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금세기동안 수백만의 아동·여성 및 남성이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학 행위의 희생자가 되어 왔음에 유념하며,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복지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 기소는 국내적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력을 제고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기로 결정하며,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국가의 국내문제 또는 무력충돌에 간섭할 권한을 당사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목적과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국제연합 체제와의 관계 속

에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독립적인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며,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과 그 집행을 보장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재판소의 설립

제1조

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를 이에 설립한다. 재판소는 상설적 기구이며,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판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 재판소의 관할권과 기능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조

재판소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재판소는 이 규정의 당사국총회가 승인하고 그 후 재판소를 대표하여 재판소장이 체결하는 협정을 통하여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는다.

제3조

재판소의 소재지

- 재판소의 소재지는 네덜란드(이하 "소재지국"이라 한다)의 헤이그로 한다.
- 재판소는 당사국총회가 승인하고 그 후 재판소를 대표하여 재판소장이 체결하는 본부 협정을 소재지국과 맺는다.
- 재판소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권한

- 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다. 또한 재판소는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 재판소는 모든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그리고 다른 여하한 국가의 영역에서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적용법규

제5조

재판소의 관할범죄

-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집단살해죄
 - 인도에 반한 죄
 - 전쟁범죄
 - 침략범죄
-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라 침략범죄를 정의하고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 재판소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조항은 국제연합헌장의 관련 조항과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집단살해죄

이 규정의 목적상 "집단살해죄"라 함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다.

- 가. 집단 구성원의 살해
-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 다.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 라. 집단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 마.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 이주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살해
- 나. 절멸
- 다. 노예화
-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 바. 고문
- 사.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 차. 인종차별범죄
-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2. 제1항의 목적상,

- 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나. "절멸"이라 함은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박탈과 같이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 타격을 말한다.
- 다. "노예화"라 함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라 함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 없이 주민을 추방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 마. "고문"이라 함은 자신의 구금 하에 있거나 통제 하에 있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로지 합법적 제재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에 부수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바. "강제임신"이라 함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제법의 다른 중대한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적으로 임신시킨 여성의 불법적 감금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임신과 관련된 각 국의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사. "박해"라 함은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권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박탈을 말한다.
- 아. "인종차별범죄"라 함은 한 인종집단의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조직적 억압과 지배의 제도화된 체제의 맥락에서 그러한 체제를 유지시킬 의도로 범하여진,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들과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북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규정의 목적 상, "성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별"이라는 용어는 이와 다른 어떠한 의미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쟁범죄

1.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이 규정의 목적 상 "전쟁범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 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 (1) 고의적 살해
- (2)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
- (3)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 (4)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무분별하게 수행된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징수
- (5)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을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로부터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 (7)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 (8) 인질행위

나.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 즉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

-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 (2) 민간 대상물, 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것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4)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반 군사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과도하게 민간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를,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를, 또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

(5)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6)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이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7)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져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식별표장 뿐만 아니라 휴전 깃발,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또는 군사표식 및 제복의 부적절한 사용

(8) 점령국이 자국의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점령 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피점령지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점령지 내 또는 밖으로 추방시키거나 이주시키는 행위

(9) 군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10) 적대 당사자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서, 당해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11) 적대국 국가나 군대에 속한 개인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12)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13) 전쟁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하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 (14) 적대 당사국 국민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 정지 또는 불허된다는 선언
- (15) 비록 적대 당사국 국민이 전쟁개시 전 교전국에서 복무하였을지라도, 그를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6) 습격에 의하여 절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 (17) 독이나 독성 무기의 사용
- (18) 질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기타 가스와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물질 또는 장치의 사용
- (19) 총탄의 핵심부를 완전히 감싸지 않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구멍이 뚫린 단단한 외피를 가진 총탄과 같이,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의 사용
- (20)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괴로움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차별적 성질의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의 사용. 다만, 그러한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은 포괄적 금지의 대상이어야 하며, 제121조와 제123조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따른 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부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2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 (22)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7조 제2항 바호에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 (23) 특정한 지점, 지역 또는 군대를 군사작전으로부터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또는 기타 보호인물의 존재를 이용하는 행위
- (24)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
- (25)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구호품 공급의 고의적 방해를 포함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투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26)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다.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 공동 제3조의 중대한 위반, 즉 무기를 버린 군대 구성원과 질병·부상·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 (1)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절단, 잔혹한 대우 및 고문
- (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 (3) 인질행위
- (4) 일반적으로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규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 없는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 라. 제2항 다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마.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여타의 중대한 위반으로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 (2)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 (4) 군사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 (5)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7조 제2항 바호에서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 (7)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 (8) 관련 민간인의 안전이나 긴요한 군사적 이유 상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과 관련된 이유로 민간인 주민의 퇴거를 명령하는 행위
- (9) 상대방 전투원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 (10)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 (11) 충돌의 타방당사자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도 않는 것으로서, 당해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이나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 (12) 충돌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 바. 제2항 마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 마호는 정부당국과 조직화된 무장집단 또는 무장집단들간에 장기적인 무력충돌이 존재할 때, 그 국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3. 제2항 다호와 마호의 어떠한 조항도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그 국가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통일과 영토적 일체성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범죄구성요건¹⁾

1. 범죄구성요건은 재판소가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조

한다. 이는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2.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은 다음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다.

- 가. 당사국
- 나. 절대과반수의 재판관
- 다. 수석검사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범죄구성요건과 그 개정은 이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부의 어느 조항도 이 규정과 다른 목적을 위한 기준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 원칙을 결코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간적 관할권

1. 재판소는 이 규정의 발효 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2. 어느 국가가 이 규정의 발효 후에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그 국가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이 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된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1.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2. 제13조 가호 또는 다호의 경우, 다음 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이 규정의 당사국이거나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였다면 재판소는 관할권을

1) <편집자 주> 여기에서 '범죄구성요건'이란 일반적인 의미의 범죄구성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6-8조의 정의되고 있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당사국들의 합의(3분의2에 의한 다수결)를 의미한다. 즉, 여기에서의 '범죄구성요건'이란 로마규정의 하위협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사할 수 있다.

- 가.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 또는 범죄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
- 나. 그 범죄 협의자의 국적국
3.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수락이 요구되는 경우, 그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에 의하여 당해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수 있다. 그 수락국은 제9부에 따라 어떠한 지체나 예외도 없이 재판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권의 행사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제14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수석검사에게 회부된 경우,
- 나.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국제연합현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수석검사에게 회부된 경우, 또는
- 다. 수석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제14조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1. 당사국은 재판소 관할권에 속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가 범하여졌다고 보이는 사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으로써 재판소의 수석검사에게 그 사태를 회부할 수 있다.
2. 회부시에는 가능한 한 관련 정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태를 회부한 국가가 입수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석검사

1. 수석검사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수석검사는 접수된 정보의 중대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석검사는 국가, 국제연합의 기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 또는 수석검사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다른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소재지에서 서면 또는 구두의 증언을 접수할 수 있다.
3. 수석검사가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집된 증빙자료와 함께 수사허가요청서를 예심재판부에 제출한다. 피해자는 절차 및 증거 규칙에 따라 예심재판부에서 진술할 수 있다.
4. 예심재판부가 수사허가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당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재판부는 수사의 개시를 허가한다. 다만, 이 허가는 사건의 관할권과 재판적격성에 관한 재판소의 추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예심재판부의 수사허가 거부는 수석검사가 동일한 사태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근거하여 추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6.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 후 제공된 정보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수석검사는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는 수석검사가 동일한 사태에 관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추가 정보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현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재판소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은 이 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요청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개신될 수 있다.

제17조

재판적격성의 문제

1. 전문의 10번째 단락과 제1조를 고려하여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 가.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거나 또는 기소된 경우. 단, 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었고, 그 국가가 당해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단, 그 결정이 진정으로 기소하려는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에 따른 결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당해인이 제소의 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이미 재판을 받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라. 사건이 재판소의 추가적 조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이 없는 경우
2. 특정 사건에서의 의사부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적용가능한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 가. 제5조에 규정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 당해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절차가 취해졌거나, 진행중이거나 또는 국내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나. 상황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되지 않게 절차의 부당한 지연이 있었던 경우
 - 다. 절차가 독립적이거나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았거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정황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또는 진행중인 경우
3. 특정 사건에서의 능력부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당해 국가가 그 국가의 사법제도의 전반적 또는 실질적 불교나 이용불능으로 인하여 피의자나 필요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할 수 없는지 여부 또는 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제18조

재판적격성에 관한 예비결정

1. 사태가 제13조 가호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되어 수석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였거나 수석검사가 제13조 다호와 제15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 수석검사는 모든 당사국과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당해 범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국가에게 이를 통지한다. 수석검사는 그러한 국가에게 비밀리에 통지할 수 있으며 또한 수석검사가 어느 자를 보호하거나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거나 또는 어느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국가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그러한 통지를 접수한 후 1개월 내에, 국가는 제5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며 자국에 대한 통지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민 또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기타의 자를 수사하고 있다거나 수사하였음을 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다. 예심재판부가 수석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수석검사는 당해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인에 대한 그 국가의 수사를 존중한다.
3. 국가의 수사 존중에 따른 수석검사의 보류는 보류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그 국가의 수사를 수행할 지정한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에 근거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수석검사에 의하여 재검토된다.
4. 당해 국가 또는 수석검사는 예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82조에 따라 상소심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는 신속하게 심리될 수 있다.
5. 수석검사가 제2항에 따라 수사를 보류한 경우, 수석검사는 당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수사 및 후속 기소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6. 예심재판부의 결정이 계류중이거나 또는 수석검사가 이 조에 따라 수사를 보류한 때에는 언제든지, 수석검사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유일한 기회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증거를 이후에는 입수할 수 없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허가를 예심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7. 이 조에 따른 예심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추가적인 중대한 사실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근거로 제19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재판소의 관할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1. 재판소는 자신에게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직권으로 제1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7조에 규정된 근거에 기한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가. 피의자 또는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이 발부된 자
 - 나. 사건을 수사 또는 기소하고 있거나 또는 수사 또는 기소하였음을 근거로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
 - 다. 제12조에 따라 관할권의 수락이 요구되는 국가
3. 수석검사는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의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13조에 따라 사태를 회부한 자도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제2항에 규정된 자 또는 국가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판소는 1회 이상 또는 재판 시작 이후의 이의제기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후에 행하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직 제17조제1항다호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5. 제2항 나호와 다호에 규정된 국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사실의 확인 이전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예심재판부에 회부된다. 공소사실의 확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1심재판부에 회부된다.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제82조에 따라 상소심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7. 제2항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국가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수석검사는 재판소가 제17조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사를 정지한다.
8. 재판소의 결정이 계류중인 동안, 수석검사는 재판소로부터 다음의 허가를 구할 수 있다.
 - 가. 제18조 제6항에 규정된 종류의 필요한 수사 조치의 수행
 - 나. 증인으로부터의 진술이나 증언의 취득 또는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시작된 증거의 수집 또는 조사의 완료
 - 다.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 수석검사가 제58조에 따라 이미 체포영장을 신청한 자의 도주 방지 조치
9. 이의제기는 그 전에 수석검사가 수행한 행위 또는 재판소가 발부한 명령이나 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재판소가 제1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더라도, 수석검사는 그 사건이 제17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근거를 부정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확인한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 수석검사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수사를 유예하는 경우, 수석검사는 관련국이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보는 관련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비밀로 한다. 수석검사가 그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수석검사는 자신이 유예하였던 절차에 관하여 해당 국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일사부재리

1. 이 규정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누구도 재판소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기초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재판소에서 재판 받지 아니한다.
2. 누구도 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다른 재판소에서 재판 받지 아니한다.
3.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상의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재판소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자는 누구도, 그 다른 재판소에서의 절차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소에 의하여 재판받지 아니한다.

- 가.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 당해인을 보호할 목적이었던 경우, 또는
- 나. 그밖에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적법절차의 규범에 따라 독립적이거나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았으며, 상황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된 경우

제21조

적용법규

1. 재판소는 다음을 적용한다.

- 가. 첫째, 이 규정, 범죄구성요건 및 절차및증거규칙
- 나. 둘째, 적절한 경우 무력충돌에 관한 확립된 국제법 원칙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조약과 국제법상의 원칙 및 규칙
- 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절하다면, 범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국내법을 포함하여 세계의 법체제의 국내법들로부터 재판소가 도출한 법의 일반원칙. 다만, 그러한 원칙은 이 규정, 국제법 및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 및 기준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 2. 재판소는 재판소의 기존 결정 속에서 해석된 법의 원칙과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 3. 이 조에 따른 법의 적용과 해석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부합되어야 하며, 제7조 제3항에서 정의된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민적·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출생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은 사유에 근거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

제22조

범죄법정주의

1. 누구도 문제된 행위가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범죄의 정의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에 의하여 확장되어서는 아니된다. 범죄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정의는 수사·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는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이 조는 이 규정과 별도로 어떠한 행위를 국제법상 범죄로 성격 짓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형별법정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다.

제24조

소급효 금지

1. 누구도 이 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확정판결 전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사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다 유리한 법이 적용된다.

제25조

개인의 형사책임

1.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범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 가.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 나. 실제로 일어났거나 착수된 범죄의 실행을 명령·권유 또는 유인한 경우

다.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의 실행이나 실행의 차수를 방조, 교사 또는 달리 조력한 경우

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에 의한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의 차수에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기여한 경우. 그러한 기여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집단의 범죄활동 또는 범죄목적이 재판소 관할범죄의 실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러한 활동 또는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

(2) 집단이 그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것

마. 집단살해죄와 관련하여 집단살해를 범하도록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타인을 선동한 경우

바. 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차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기도하였으나 본인의 의도와의 무관한 사정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범행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또는 달리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자신이 범죄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면 범죄미수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4.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18세 미만 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재판소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7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1. 이 규정은 공적 지위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자동적인 감형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개인의 공적 지위에 따르는 면제나 특별한 절차규칙은 그 자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의 다른 근거에 추가하여,

가. 다음과 같은 경우,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행동하는 자는 자신의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효적인 권위와 통제 하에 있는 군대가 범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군대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군대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또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자가 그들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사항을 수사 및 기소의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나. 가호에 기술되지 않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상급자는 자신의 실효적인 권위와 통제 하에 있는 하급자가 범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하급자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하급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또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급자가 알았거나 또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무시한 경우

(2) 범죄가 상급자의 실효적인 책임과 통제 범위 내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

(3) 상급자가 하급자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문제를 수사 및 기소의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제29조

시효의 부적용²⁾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주관적 요건

1.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사람은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행한 경우에만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2. 이 조의 목적 상 다음의 경우는 고의를 가진 것이다.
 - 가. 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이 그 행위에 관여하려고 의도한 경우
 - 나. 결과와 관련하여, 사람이 그 결과를 야기하려고 의도하거나 또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아는 경우
3. 이 조의 목적 상 “인식”은 어떠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식하다” 및 “인식하고서”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31조

형사책임 배제사유

1. 이 규정에서 정한 여타의 형사책임 배제사유에 덧붙여, 행위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가.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법의 요건에 따르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는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을 겪고 있는 경우
 - 나.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법의 요건에 따르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는 중독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독의 결과로서 자신이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2)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형사시효제도는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제도가 있는데, 이 조항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한다.

관여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그 위험을 무시하고 자발적으로 중독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람이 급박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범죄의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이나 군사적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보호되는 재산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군대가 수행하는 방어작전에 그 자가 관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 호에 따른 형사책임 배제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된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급박한 사망 또는 계속적이거나 급박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의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강박에 의하여 야기되었고, 그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다만 그는 피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위해를 초래하려고 의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위협은,

- (1)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 (2) 그 사람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상황에 의하여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2. 재판소는 이 규정에 정한 형사책임 배제사유가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형사책임 배제사유라도 그 사유가 제21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법에 의하여 도출된 경우, 재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사유의 고려에 관한 절차 및 증거규칙에 규정된다.

제32조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1. 사실의 착오는 그것이 범죄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흡결시키는 경우에만 형사책임 배제사유가 된다.
2. 특정 유형의 행위가 재판소의 관할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의 착오는 형사책임 배제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의 착오가 범죄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

을 흡결시키는 경우나 제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 배제사유가 될 수 있다.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

1. 어떠한 자가 정부의 명령이나 군대 또는 민간인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의 형사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아니한다.
 - 가. 그자가 정부 또는 관련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 하에 있었고
 - 나. 그자가 명령이 위법임을 알지 못하였고
 - 다.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적이지는 않았던 경우
2. 이 조의 목적 상, 집단살해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하게 위법이다.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제34조

재판소의 기관

재판소는 다음 기관으로 구성된다.

- 가. 소장단
- 나. 상소심부, 1심부 및 예심부
- 다. 검찰국
- 라. 사무국

제35조

재판관의 근무

1. 모든 재판관은 재판소의 전임 구성원으로 선출되며, 그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때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장단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선출된 때로부터 전임으로 근무한다.
3. 소장단은 재판소의 업무량을 기초로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나머지 재판관들의 어느 정도를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제40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한다.
4. 전임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재판관에 대한 재정적 조치는 제49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6조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1.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재판소에는 18인의 재판관을 둔다.
2. 가. 재판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소장단은 중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사유를 적시하여 제1항에 명시된 재판관의 중원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제안을 신속히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 나. 그러한 제안은 제112조에 따라 소집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심의된다. 제안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승인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시점에 발효한다.
 - 다. (1) 나호에 따라 재판관의 중원을 위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 추가되는 재판관의 선거는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다음 회기에 서 실시된다.
 - (2) 나호와 다호(1)에 따라 재판관의 중원을 위한 제안이 채택되고 발효한 경우, 소장단은 재판소의 업무량이 이를 정당화할 경우 그 후 언제든지 재판관의 감원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의 수는 제1항에 명시된 수 미만으로 감원되어서는 아니된다. 제안은 가호 및 나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재안이 채택된 경우, 재판관의 수는 필요한 수에 도달될 때까지 재직중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3. 가. 재판관은 각 국에서 최고 사법직에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및 성실성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된다.
 - 나. 재판관 선거 후보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1) 형법과 형사절차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와 유사

- 한 다른 자격으로서 형사소송에서의 필요한 관련 경력, 또는,
- (2)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과 같은 국제법 관련 분야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재판소의 사법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법률 직위에서의 풍부한 경험
- 다. 재판관 선거 후보자는 재판소의 실무언어 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 가. 재판관 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이 규정의 어떠한 당사국도 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 당해 국가에서 최고 사법직의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
 -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상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정한 절차 추천에는 후보자가 제3항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상세하게 명시하는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 나. 각 당사국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단, 피추천자는 자국민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이 규정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 다. 당사국총회는 적절한 경우 추천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당사국총회가 정한다.
5. 선거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후보자명부를 둔다.
- 제3항 나호(1)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A명부
제3항 나호(2)에 명기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B명부
두 개 명부 모두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는 등재될 명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의 재판관 선거시 A명부로부터는 최소한 9인의 재판관이, 그리고 B명부로부터는 최소한 5인의 재판관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 후의 선거는 양 명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재판관들이 재판소에서 상용하는 비율을 유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6. 가. 재판관은 제112조에 따라 재판관 선거를 위하여 소집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제7항을 조건으로, 재판관으로 선출되는 자는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최다득표를 한 18인의 후보자로 한다.
- 나. 제1차 투표에서 충분한 수의 재판관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충원될 때까지 가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속 투표를 실시한다.
7. 어떠한 2인의 재판관도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재판소 구성의 목

- 적 상 2개 이상의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된다.
8. 가. 당사국들은 재판관의 선출에 있어서 재판소 구성원 내에서 다음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세계의 주요 법체계의 대표,
 - (2) 형평성 있는 지리적 대표, 그리고
 - (3) 여성 및 남성 재판관의 공정한 대표
- 나. 당사국들은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 전문지식을 가진 재판관을 포함시킬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9. 가. 재판관은 나호를 조건으로 9년간 재직하며, 다호 및 제37조 제2항을 조건으로 재선될 수 없다.
- 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의 3분의 1은 추첨으로 3년의 임기동안 근무하도록 선정되며, 또 다른 3분의 1의 재판관은 추첨으로 6년의 임기동안 근무하도록 선정되며, 나머지 재판관은 9년의 임기동안 근무한다.
- 다. 나호에 따라 3년의 임기동안 근무하도록 선정된 재판관은 완전한 임기로 재선될 수 있다.
10.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1심부 또는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재판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1심 또는 상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재직한다.

제37조

재판관의 결원

1.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6조에 따라 결원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2.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재직하며, 그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완전한 임기로 재선될 수 있다.

제38조

소장단

- 재판소장과 제1부소장 및 제2부소장은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들은 각각 3년의 임기 또는 그들 각자의 재판관 임기의 종료 중 먼저 만료되는 때까지 재직한다. 그들은 한 번 재선될 수 있다.
- 제1부소장은 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판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소장은 재판소장과 제1부소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판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재판소장은 제1부소장 및 제2부소장과 함께 소장단을 구성하며, 소장단은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검찰국을 제외한 재판소의 적절한 운영, 그리고

나. 이 규정에 따라 소장단에 부여된 다른 기능

- 제3항 가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장단은 상호 관심사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석검사와 조정하고 동의를 구한다.

제39조

재판부

- 재판관 선거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는 제34조 나호에 명시된 담당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상소심부는 재판소장과 4인의 다른 재판관으로, 1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그리고 예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담당부 배정은 각 부가 수행할 기능의 성격과 선출된 재판관의 자격과 경력에 기초하여 각 부에 형법 및 형사절차와 국제법에서의 전문지식이 적절히 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심부와 예심부는 형사소송의 경력이 있는 재판관들을 위주로 구성된다.
- 가.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은 각 부의 재판부에 의하여 수행된다.
 - (1) 상소심재판부는 상소심부의 모든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 (2) 1심재판부의 기능은 1심부의 3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 (3) 예심재판부의 기능은 예심부의 3인의 재판관 또는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 규칙에 따라 예심부의 단독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 다. 이 항은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인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복수의 1심재판부 또는 예심재판부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가. 1심부와 예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부에서 3년 간 근무하며, 그 후에도 해

당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건 종결시까지 근무한다.

나.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들의 전체 임기동안 그 부에서 근무한다.

-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오직 그 부에서만 근무한다. 그러나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소장단이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부에서 예심부로 또는 그 반대로 재판관을 잠정적으로 배속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예심재판 단계에 참여하였던 재판관은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1심재판부에 참여할 수 없다.

제40조

재판관의 독립

- 재판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 재판관은 자신의 사법적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재판소의 소재지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재판관은 다른 본업적 성격의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는 재판관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문제가 재판관 개인에 관한 것인 경우 당해 재판관은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재판관의 회피와 제척

- 소장단은 재판관의 요청이 있으면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당해 재판관이 이 규정 상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도록 할 수 있다.
- 가. 재판관은 어떠한 사유에서든 자신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건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 특히 재판관이 전에 어떤 자격으로든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또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가 연루된 국내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재판관은 이 항에 따라 그 사건으로부터 제척된다. 재판관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도 제척된다.
- 나. 수석검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는 이 항에 따라 재판관의 제척을 요